

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28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조례안 참고

2.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3년 4월 1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조례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9,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js9695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조례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(박상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3. 3. .

발 의 자 : 박상현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훈미, 이동한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,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지원 대상 (안 제4조)
- 라. 지원 사업 (안 제5조)

3. 관련법령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군포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군포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군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군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 대상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
2.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

3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사업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
2. 상담 및 교육, 정보제공 사업
3. 직업능력개발 및 훈련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
4. 보건·의료서비스 지원 사업
5.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
6.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
7.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지원의 중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.

1.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,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
2.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
3.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
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

제7조(환수 조치)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,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

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